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763

제출연월일 : 2009. 1. 30

1. 안 건 명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
2. 심사경과

의안번호	제출일자	회부일자	상 정 내 역 (상정일자)	심사결과
763	2009.1.30	2009.2.4	제213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(2009.2.19)	원안 동의

3. 제안이유 및 요지 (도시계획국장 송득범)
   가. 제안 이유
      ○ 당초 공공공지 결정 후 폐지된 문래동6가 25-1부지를 현재 현황에 알맞은 공원으로 결정하여, 인근 준공업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코자 함.
   나. 주요 요지
      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안)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신설	공원	소공원	영등포구 문래동 6가 25-1	-	증)1,954.7	1,954.7		

4. 도시관리계획사항
   ○ 준공업지역
5.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안)에 대한 의견청취
   가. 주민의견청취 (2008.9.8~9.22) : 의견 없음.
   나. 구의회 의견청취 (2008.10.13) : 원안 동의
   다.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(2008.11.21) : 원안 가결
6. 관련부서 의견
   ○ 의견 없음.
7.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
   ○ 본 계획은 녹지공간이 부족한 준공업지역에 공원을 결정하는 사항으로, 인근 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 개선이 기대됨.
8. 기 타
   ○ 토지현황 : 1필지 1,954.7㎡ (구유지)
   ○ 건물현황 : 없음.
   ○ 재원조달방안 : 없음(비예산).
9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김종식)
   ○ 본 안건은 영등포구 문래동6가 25-1번지 일대 1,954.7㎡를 공원으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영등포구청장이 입안하여 요청한 사안임.
   ○ 대상지는 당초 공공공지 결정 후 폐지된 곳으로 인근 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목적에서 식재 등 사실상 공원으로 조성되었고, 이 부지를 이용 현황에 맞게 도시계획시설 소공원으로 결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.
      - 참고로 본 공원조성 사업은 공장이적지를 자치구에서 매입하여 공공공지로 결정한

후 노후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15종류의 나무 8,600여 그루를 식재하여 조성하였음.

- 이는 자치구 차원의 지역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소공원과 같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여 향후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목적의 자치구 단위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10. 질의 및 답변 요지

○ 특이사항 없음.

11. 토론 요지

○ 특이사항 없음.

12. 심사 결과 : 원안 동의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